

『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양 기 철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방위산업 육성사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○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민·군기술 협력 사업 촉진법」,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은,
 -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중·소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
 - 구미지역은 (주)한화, 한화시스템, LIG넥스원 등의 대기업과 100여개의 국방관련 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금오공대, 경운대, 구미대 등 국방 관련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어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므로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